

효정주간보호센터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규정 개요

제3장 요양급여범위

제4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효정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자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목적)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제2장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효정주간보호센터	지정일자	2021.08.01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입소정원	24명
기관의 장	정 호 진	연락처	052-945-1945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11-8 다모필하우스 상가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900 원 (1식)	
	간식비	500 원 (1회)	
시설규모	건물면적 1065㎡, 연면적 696.528 ㎡		

구분	운동· 활동실	사무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식당/ 조리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시설	○		○		○	○	○	○	○

모집방법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의료서비스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한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 (보호자)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입소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제3장 요양급여범위

제7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센터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8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95점).
2.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75점~ 95점).
3.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60점~75점).
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10조(급여범위 게시)

센터는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11개).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10개).
6. 기타 교육자료.

(신입직원교육,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 예방,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대처 등)

제11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항목)

-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②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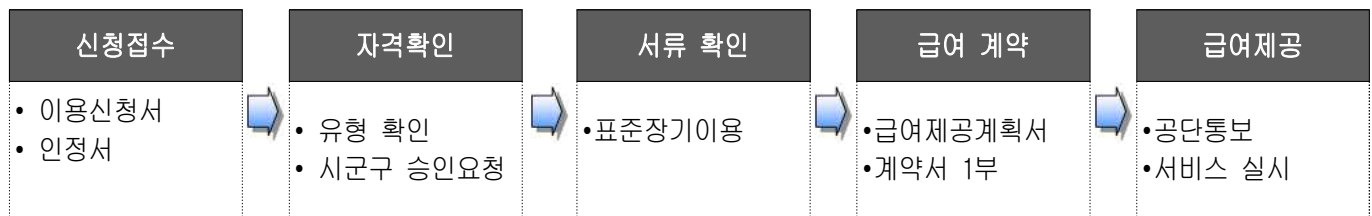
본 기관의 주간보호 이용자 정원은 24명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이용자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 등급 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공단사이트등록,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오프라인	관계센터 연계 협력, 간판 등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 본 사업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 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주간보호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센터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급여계약 절차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자기결정: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1. 다음의 표와 같이 절차를 규정한다.

계약기간	<p>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p> <p>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p> <p>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p> <p>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p> <p>※ ③ -> 자동연장.</p> <p>④ 항의 내용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톡)</p>
계약목적	<p>▶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p>

<p>월 이용료 본인부담금</p>	<p>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p> <p>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p> <p>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p> <p>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p>
<p>그 밖의 비용 부담액</p>	<p>▶ 장기요양인정대상자 비 급여 (급식: 2,900원, 간식비 일1회: 500원)</p> <p>▶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p>	<p>▶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p> <p>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p>▶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p>계약의 해제</p>	<p>▶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p> <p>▶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험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8.06.12>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069,900 (약 31일)	1,869,600 (약 28일)	1,455,800 (약 26일)	1,341,800 (약 24일)	1,151,600 (약 21일)	643,700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등급	금액(원)	분류	등급	금액(원)
3시간 이상 ~	1	39,810	10시간 이상 ~	1	73,110
	2	36,850		2	67,720
	3	34,020		3	62,570
	4	32,470		4	61,000
	5. 인지지원	30,920		5 · 인지지원	59,450 / 53,640
6시간 이상 ~	1	53,360	13시간 초과	1	78,400
	2	49,420		2	72,630
	3	45,620		3	67,100
	4	44,070		4	65,540
	5. 인지지원	42,500		5 · 인지지원	63,990 / 53,640
8시간 이상 ~	1	66,360	(일) 종식 + 간식 = 2,900원 + 500원 석식 = 2,900원 일요일 이용 시 소정수가에 30% 가산		
	2	61,480			
	3	56,760			
	4	55,210			
	5. 인지지원	53,640			